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81306 손해배상(지)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우종환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송경

변 론 종 결 2026. 3. 13.

판 결 선 고 2026.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이하 '원고 어문저작물'이라 한다)"이라는 저작물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D"이라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이다. 피고는 원고의 위 각 저작물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원고 어문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프로그램 등을 작성하여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작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원고 위 저작물들에 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어문저작물에 'E'이라는 아이디어를 넘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설령 원고 어문저작물 중 저작권으로 보호할 만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어문저작물의 구체적인 표현형식과 피고의 금융거래 서비스에 나타난 표현형식이 서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거나, 피고가 원고 어문저작물에 의거하여 위 서비스를 제작·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어문저작물에 관한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24

판사 황일준